

# 한국전기안전공사노동조합

## 규약 및 규정집



### 규 약

제 정	1988년 2월 3일
개 정	1988년 12월 15일
개 정	1990년 3월 20일
개 정	1991년 1월 24일
개 정	1991년 11월 21일
개 정	1993년 11월 10일
개 정	1994년 12월 16일
개 정	1995년 4월 21일
개 정	1997년 4월 25일
개 정	1997년 9월 5일
개 정	1998년 4월 24일
개 정	1998년 12월 21일
개 정	1999년 4월 7일
개 정	2000년 1월 20일
개 정	2000년 4월 26일
개 정	2001년 4월 26일
개 정	2003년 4월 25일
개 정	2003년 7월 23일
개 정	2004년 4월 23일
개 정	2007년 4월 23일
개 정	2008년 4월 28일
개 정	2013년 4월 22일
개 정	2014년 8월 27일
개 정	2015년 4월 27일
<u>개 정</u>	<u>2016년 12월 15일</u>

한국전기안전공사노동조합

한국전기안전공사노동조합

# 목 차

전 문	1
제 1 장 총 칙	1
제 2 장 조 합 원	2
제 3 장 조 직	3
제 4 장 기 관	3
제 1 절 총 회	4
제 2 절 <u>대의위원회</u>	5
제 3 절 중앙위원회	7
제 4 절 중앙집행위원회	8
제 5 절 회계감사위원회	9
제 6 절 선거관리위원회	10
제 7 절 특별위원회	10
제 5 장 임 원	10
제 6 장 각 국	12
제 7 장 지 부	13
제 1 절 지부총회	13
제 2 절 지부집행위원회	14
제 3 절 지부선거관리위원회	14
제 4 절 지부회계감사	15
제 5 절 지부장	15
제 8 장 단체교섭과 쟁의	16
제 9 장 노사협의회	16
제10 장 재 정	17
제11 장 상 별	18
제12 장 희생자 구제	19
제13 장 해 산	19
보칙 및 부칙	20

# 전 문

한국전기안전공사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전 조합원과 그 가족은 물론, 더 나아가 전국의 노동자와 함께 굳게 단결하여 우리 조합원들의 경제적 생활권을 옹호하고 사회적 지위를 확립하여 노동생활 속에서의 공포와 불안 없는 진정한 민주사회의 노동자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규약을 만든다.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조합의 명칭은 한국전기안전공사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이라하고, 약칭은 "전안노조"라 한다. 영문표기는 KOREA ELECTRICAL SAFETY CORPORATION WORKERS UNION (약칭: KESWU )로 한다.

제 2 조 (사무소)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본사 내에 둔다.(2016.12.15일 개정)

제 3 조 (목적) 조합은 조합원의 노동조건을 유지·개선하고 평등원칙에 의한 자유보장과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그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민주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조합은 제3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과 활동을 한다.

1. 규약에 명시된 목적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
2. 조합 의결기구의 의결사항과 지시사항 집행
3. 본부와 지부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한 조합활동의 활성화, 조직강화, 투쟁력 강화 활동
4. 노동자의 노동조건의 유지개선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5. 공사 경영과 관련된 감시, 개선, 참여 등 직장민주화 추진에 관한 사항
6. 조합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해 수행해야 할 사항
7. 기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5 조 (연합 및 상급단체) 조합은 목적달성에 필요한 연합 및 상급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 6 조 (법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제 2 장 조합원

제 7 조 (구성) 조합의 구성은 UNION SHOP 제도로 한다.

제 8 조 (자격)

- ① 조합의 가입대상은 공사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써 사용자를 위해 일하는 3급 이상의 간부를 제외한 4급이하 일반직 직원은 모두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  
(2016.12.15일 개정)
- ② 사업장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중 조합에 가입한 자는 소속 지부 조합원이 된다.

제 9 조 (의무)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가진다.

- 1. 조합 규약을 준수할 의무
- 2. 조합비와 각종 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 3. 규약과 규정에 따른 조합 모든 기구의 결정사항과 지침을 준수할 의무
- 4. 조합의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 5. 규약, 규정에 따른 신상 변동사항과 활동을 보고할 의무

제 10 조 (권리)

-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 1. 선거권과 피선거권. 단, 정권 및 대회 공고일까지 조합원 명부에 미등록된 자는 표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다.
  - 2. 각종 회의 발언권과 의결권
  - 3. 조합의 모든 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 4. 조합 결정사항과 사업현황 공개를 요구할 권리
  - 5. 조합이 관리하는 시설 이용 또는 사업에 참여할 권리
  - 6. 조합에서 제공하는 각종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 7. 그 밖에 규약이 정하는 권리
- ②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조합원에게는 조합에 권리 제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11 조 (희생자의 신분보장) (2016.12.15일 개정)

- ① 조합원이 조합 공식기구의 결정사항을 수행하다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조합은 그 피해에 대한 원상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2016.12.15일 개정)
- ② 전향의 희생자는 본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신분은 보장하고 그 피해보상은 별도로 정하는 희생자 구제 규정에 의한다.(2016.12.15일 개정)

제 12 조 (자격의 상실) 조합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 1. 사망, 해고, 퇴직 등에 의하여 공사와 고용계약이 소멸한 때, 다만, 제11조를 제외한 해고에 대하여 법원 또는 행정관청에 구제 요청을 하여 해고 효력을 다투고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 까지는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  
(2016.12.15일 개정)
- 2. 조합에서 제명된 경우
- 3. 공사사규, 직제규정시행세칙에 따른 직급별 정원표 상 3급이상으로 보직 된 경우  
(2016.12.15일 개정)

## 제 3 장 조 직

제 13 조 (지부 및 지회)

- ① 노동조합 산하에 본사 및 지역본부별로 지부 및 지회를 둔다. 단, 공사의 기구변동에 따른 해체 및 신설에 대하여는 본부 중앙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2016.12.15일 개정)
- ② 사고지부는 본부에서 관장하며 당해년도 본부 대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 제 4 장 기 관

제 14 조 (기관)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둔다.

- 1. 총 회
- 2. 대의원회 (2016.12.15일 개정)
- 3. 중앙위원회
- 4. 중앙집행위원회
- 5. 중앙회계감사위원회
- 6. 선거관리위원회
- 7. 특별위원회

제 15 조 (성립과 의결) (2016.12.15일 개정)

- ① 조합의 각종 회의는 본 규약에 따로 정한 내용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16.12.15일 개정)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조합의 의결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특별한결로써 재적인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인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
  - 2. 임원의 해임
  - 3. 합병, 분할, 해산 및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 4. 긴급동의와 번안동의에 관한 사항

(2016.12.15일 개정)

- ③ 제2항의 의결은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2016.12.15일 개정)

제 16 조 (회의의 공고) (2016.12.15일 개정)

- ① 각종 회의의 공고는 회의개시 전 7일 이내에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시하고 공고한다. 단, 쟁의행위 결의는 1일전 소집공고 할 수 있다.
- ② 위 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항일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 할 수 있다.
- ③ 소집 공고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소집일 5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2016.12.15일 개정)

제 17 조 (회의 규정) 회의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회의규정에 의한다.

## 제 1 절 총 회

제 18 조 (구성)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 모든 결의에 우선하며, 조합원 전원 으로 구성한다.

제 19 조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3월중에 실시한다. 단, 위원장 임기만료에 따른 정기 총회를 제외하 총회는 대의원회로 같음 할 수 있다.(2016.12.15일 개정)

③ 임시 총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조합원 1/3이상이 회의 목적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 3. 대의원 1/3이상이 소집을 요구하였을 경우
- 4. 1, 2, 3호의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 20 조 -삭제-

(2016.12.15일 개정)

제 21 조 (기능)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 1. 위원장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 2. 쟁의행위 의결에 관한 사항 (2016.12.15일 개정)
- 3. 대의원회에서 상정한 사항 (2016.12.15일 개정)
- 4. 합병, 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 5.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 6. 1호 이외의 임원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 7.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인준에 관한 사항
- 8. 쟁의대책에 관한 사항
- 9. 대의원회나 중앙위원회 및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2016.12.15일 개정)
- 10. 규약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11.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 12. 사업계획 및 평가 승인에 관한 사항
- 13.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14. 특별부과금의 부과 및 특별예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15. 중앙회계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 16. 연합 및 상급단체의 가입, 탈퇴에 관한 사항
- 17. 상급 노동단체에 파견할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 18. 기타 중요한 사항

② 1항 1호 내지 5호, 7호를 제외한 사항은 대의원회로 같음할 수 있다. (2016.12.15일 개정)

③ 총회의 형식은 투표행위로 같음할 수 있다.

## 제 2 절 대의원회 (2016.12.15일 개정)

제 22 조 (구성) 대의원회는 총회다음의 의결기구로서 각 지부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2016.12.15일 개정)

제 23 조 (소집)

- ① 대의원회는 정기 대의원회와 임시 대의원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2016.12.15일 개정)
- ② 정기대의원회는 매년 4월중에 1회, 하반기에 1회를 위원장이 소집한다.(하반기 시기는 대의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정이 해소되었을 때에는 3주일 이내에 재소집하여야 한다.(2016.12.15일 개정)
- ③ 임시 대의원회의 개최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16.12.15일 개정)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하고 서명 날인하여 회의소집을 요구한 경우 (2016.12.15일 개정)
  3. -삭제- (2016.12.15일 개정)

제 24 조 (공고) -삭제- (2016.12.15일 개정)

제 25 조 (대의원 배정기준)

- ① 대의원회에 참가할 대의원의 배정은 지회총회 공고일 현재 총인원으로 한다. (2016.12.15일 개정)
- ② 대의원은 각 사업소별 1명씩을 선출한다.
- ③ 제 2항에 의한 선출은 60명당 1명의 대의원을 추가로 선출하며, 추가인원은 31명이상 발생 할 경우 마다 1명을 선출한다.

조합원수	대의원 수
1 - 90	까지 1
91 - 150	“ 2
151 - 210	“ 3

제 26 조 (임기)

- ① 대의원의 임기는 3년을 원칙으로 하며, 차기 대의원 선출일 전일까지로 한다.
- ②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27 조 (대의원 선출)

- ① 대의원회에 참가할 대의원은 각 지부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2016.12.15일 개정)
- ② 대의원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선한다.
- ③ 구체적 선출방법은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제 28 조 (기능) 대의원회는 규약 제21조 1항 1호 내지 5호, 7호를 제외한 사항은 총회에 갈음하여 의결할 수 있다. (2016.12.15일 개정)

제 29 조 (대의원의 권리와 의무)

- ① 대의원은 해당사업소를 대표하여 대의원회에 출석하며, 의안을 심의, 의결한다. (2016.12.15일 개정)
- ② 대의원은 해당사업소를 대표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2016.12.15일 개정)

## 제 3 절 중앙위원회

제 30 조 (구성)

- ① 중앙위원회는 본부 임원(회계감사 제외)과 각 지부장으로 구성한다.
- ② 지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부장이 지명하는 지부 간부를 참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받은 자는 의장의 요청시만 발언권을 가지며, 심의, 의결권은 없다.

제 31 조 (소집)

- ① 중앙위원회는 정기 중앙위원회와 임시 중앙위원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중앙위원회는 매년 4회 정도 개최 한다.

③ 임시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중앙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하고 서명 날인하여 회의소집을 요구할 경우 (2016.12.15일 개정)
3. -삭제- (2016.12.15일 개정)

제 32 조 (공고) -삭제- (2016.12.15일 개정)

제 33 조 (기능)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 결정한다.

1. 총회(대의원회)에서 수임하는 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항 (2016.12.15일 개정)
2. 중앙집행위원회의 부의 안건 처리에 관한 사항
3. 규정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조합원의 징계 및 표창 건의에 관한 사항
5.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6. 희생자 구제에 관한 사항
7. 총회 부의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
8. 임원 진원 유고시 직무대행 결정에 관한 사항
9. 공사 기구변동에 의한 조합 해체 및 신설에 관한 사항
10. 기타 중요한 사항

## 제 4 절 중앙집행위원회

제 34 조 (구성) 중앙집행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급 국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집행위원은 20명 이내로 한다.

제 35 조 (소집)

-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정기 중앙집행위원회와 임시 중앙집행위원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 한다.
- ② 중앙집행위원회는 매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임시 중앙집행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 소집할 수 있다.

제 36 조 (회의참석) 중앙집행위원은 각급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그 회의 구성원의

요청이 있을 때는 발언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37 조 (기능) 중앙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16.12.15일 개정)
1. 총회(대의회) 또는 중앙위원회에서 수임하는 사항 (2016.12.15일 개정)
2. 총회, 대의원회 또는 중앙위원회 개최준비와 부의안건 작성 (2016.12.15일 개정)
3. 운영방침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4. 조합원 상벌 심의에 관한 사항 (2016.12.15일 개정)
5. 지부 및 지회 조합원의 건의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6. 본부 중앙선거관리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규약 및 규정의 해석에 관한 사항
8.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항
9. 상급기관 임원출마 및 파견에 관한 사항
10. 기타 중요한 사항

## 제 5 절 회계감사위원회

제 38 조 (구성)

- ① 중앙회계감사 위원은 대의원회에서 대의원의 추천으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3인의 회계감사로 구성한다. (2016.12.15일 개정)
- ② 대표감사는 회계감사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 39 조 (소집)

- ① 매년 3월과 9월에 정기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 ② 대표회계감사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7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40 조 (기능)

- ① 회계감사위원회는 조합의 예산 및 재정집행 사항을 년 2회 이상 감사한다.
- ②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본부 및 지부 경리 상황을 업무지도 할 수 있다.
- ③ 대표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 결과를 위원장에게 통고하며,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16.12.15일 개정)

제 41 조 (회계감사) 조합의 회계감사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 회계규정에 의한다.

## 제 6 절 선거관리위원회

제 42 조 (선거관리위원회) 조합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2016.12.15일 개정)

제 43 조 (선거관리규정) 조합의 선거관리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2016.12.15일 개정)

## 제 7 절 특별위원회

제 44 조 (특별위원회)

- ① 조합 활동 및 운영에 관하여 특별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②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조직발전 및 강화와 연대에 관한 사항
  3. 정치활동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 45 조 (구성 및 운영)

- ① 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② 기타 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특별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한다.

## 제 5 장 임 원

제 46 조 (임원) 본부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 1명
2. 수석 부위원장 : 1명
3. 부위원장 : 약간명
4. 중앙회계감사 : 3명

제 47 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 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업무를 총괄한다.
- 나. 부위원장 업무를 분장한다.
- 다. 본부의 각종 공문 및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 라.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마. 수석부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추천하고,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2016.12.15일 개정)

바. 노조전임자 및 각급 국장의 임면권을 가진다.

사 조합에서 위임받은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의 위원을 임면한다.

아. 각종 출판물의 발행인이 된다.

자. 조합에서 위임받은 단체교섭 및 협약의 체결권을 갖는다.

차. 조합의 쟁의행위 제기권을 갖는다.

카. 조직 질서유지와 조합원의 권익수호에 대한 필요한 권한을 가진다. (2016.12.15일 개정)

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추천된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한다.

파. 규약 및 규정의 해석권을 가지며, 대의원회 및 중앙위원회에서 번복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2016.12.15일 개정)

2. 부위원장

가. 위원장을 보좌한다.

나. 위원장 유고시 수석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다. 각종 회의의 의장단이 된다.

라. 본부 및 지부를 총괄 지휘한다.

3. 중앙회계감사위원

가. 중앙회계감사위원은 본 조합의 재정업무를 감사한다.

제 48 조 (임원의 선출)

- ① 위원장 선출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및 무기명투표에 의한다.
- ② 수석부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선출된 위원장이 추천하고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2016.12.15일 개정)
- ③ 중앙회계감사위원의 선출은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다.
- ④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제 49 조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차기 선출시까지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임기도중 보선 및 재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잔여기간 1년 미만일 경우 보궐선거를 하지 않는다.
- ③ 위원장 결원시는 차기 선출시까지 그 직무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대리한다. (2016.12.15일 개정)

1. 수석 부위원장 (2016.12.15일 개정)

2. 부위원장 중 연장자. (2016.12.15일 개정)

- ④ 위원장의 인계인수는 선출후 10일 이내 하여야 한다. 단, 인계인수를 사유로 인하여 1항의 임기기간에 영향을 줄 수 없다.

## 제 6 장 각 국

제 50 조 (국) 본부에 다음 각 호의 국을 둔다.

- 1. 사 무 국
- 2. 정책연구국
- 3. 조직쟁의국
- 4. 선전홍보국
- 5. 연대사업국
- 6. 조사통계국
- 7. 후생복지국
- 8. 문 화 국
- 9. 여 성 국
- 10. 단체교섭국

제 51 조 (차장 및 사무직원) 각 국의 차장 및 사무직원은 필요에 따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 52 조 (사무규정) 본부 각 국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별도 사무규정을 둔다.

제 53 조 (서류비치) 본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 1. 조합원 명부

2. 규약

3. 임원의 성명 및 주소록

4. 회의록

5. 재정에 관한서류

## 제 7 장 지 부

제 54 조 (운영규정) 지부 운영규정은 지부총회 의결로써 제정 시행한다. 다만, 본 규약 및 규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무효로 한다. (2016.12.15일 개정)

제 55 조 (기구) 지부에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

- 1. 지부 총회
- 2. 지부 집행위원회
- 3. 지부 선거관리위원회

### 제 1 절 지 부 총 회

제 56 조 (구성) 지부 전체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제 57 조 (소집)

- ① 지부총회는 지부정기총회와 지부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016.12.15일 개정)
- ② 지부정기총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는 정기총회 년도를 제외한 매년 3월중에 지부장이 소집한다. (2016.12.15일 개정)
- ③ 지부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2. 소속지부 조합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하고 서명 날인하여, 회의소집을 요구한 경우(2016.12.15일 개정)
  - 3. -삭제- (2016.12.15일 개정)

제 58 조 (공고) -삭제- (2016.12.15일 개정)

제 59 조 (기능) 지부총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부운영을 위한 지부규정의 제정 및 개폐 (2016.12.15일 개정)
  2. 지부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3. 지부장 및 본부 대의원, 지부 회계감사 선출과 불신임에 관한 사항
  4. 지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지부의 중요사항
- (2016.12.15일 개정)

## 제 2 절 지부집행위원회

제 60 조 (구성) 지부 집행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부장 : 1명
2. 부지부장 : 약간명
3. 부서장 : 약간명
4. 지부 회계감사 : 1인

제 61 조 (소집)

- ① 매 분기 1회 지부장이 소집한다.
- ②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 62 조 (기능) 지부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부 총회 의결사항의 처리 (2016.12.15일 개정)
2. 지부 총회 안건 작성
3. 본부 집행연락
4. 지부 선거관리위원 위촉
5. 기타 지부의 중요한 사항

## 제 3 절 지부선거관리위원회

제 63 조 (선거관리위원회) 지부 선거의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지부 선거관리 위원회를 두며, 지부장이 위촉한다. (2016.12.15일 개정)

제 64 조 (선거관리) 지부의 각종 선거는 선거관리규정 의 내용을 준용한다.  
(2016.12.15일 개정)

## 제 4 절 지부회계감사

제 65 조 (구성)

- ① 지부총회에서 조합원의 의견에 따라 선출된 1명이상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② 1항에 의한 임기도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 지부 집행위원의 의견에 따라 선출한다.

제 66 조 (기능) 규약 제 40조 회계감사의 기능을 준용한다. (2016.12.15일 개정)

제 67 조 (회계감사) 지부의 회계감사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 회계규정에 의한다.

## 제 5 절 지 부 장

제 68 조 (임무)

- ① 지부를 대표하고 일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지부의 각종 공문 및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 ③ 지부 총회 및 지부 집행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④ 지부 노사간담회 위원을 임명한다.
- ⑤ 지부 집행위원을 임명한다.

제 69 조 (임기)

- ① 지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차기 선출시까지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임기도중 보선 및 재선된 지부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잔여기간 1년 미만일 경우 보선을 하지 않는다.
- ③ 지부장 결원시는 차기 선출시까지 부지부장이 대리한다.
- ④ 지부장의 인계인수는 선출 후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단, 인계인수를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임기기간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제 70 조 (선출) 지부장의 선출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 제 8 장 단체교섭과 쟁의

제 71 조 (단체교섭) 조합의 모든 교섭권 및 대표권은 위원장이 행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교섭권 및 대표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 72 조 (단체협약의 체결) 조합의 협약체결은 위원장이 대표자로서 체결한다.  
(2016.12.15일 개정)

제 73 조 (교섭위원) 조합의 단체교섭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한다.

제 74 조 (노동쟁의) 조합은 이 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자와 평화적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그 관철을 위해 노동쟁의를 할 수 있다.

제 75 조 (쟁의발생) 조합의 쟁의발생은 대의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76 조 (쟁의행위) 조합의 쟁의행위 의결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77 조 (쟁의대책위원회 구성 및 기능)

- ① 쟁의발생(조정개시) 및 행위 의결시에는 대의원회에서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조합은 쟁의대책위원회의 지시를 따른다. (2016.12.15일 개정)
- ② 쟁의대책위원회의 권한은 대의원회의 의결 및 위임사항에 국한한다.  
(2016.12.15일 개정)

## 제 9 장 노사협의회

제 78 조 (노사협의회)

- ① 노사협의회는 대표권은 위원장이 행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대표권을 위임할 수 있다.
- ② 조합의 노사협의회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③ 임금협약, 단체협약 사항을 밀도는 내용에 대해서는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없다.

## 제 10 장 재 정

제 79 조 (재원)

- ① 조합의 재정은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의무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 ② 운영상 부족시는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추가 징수할 수 있다. (2016.12.15일 개정)

제 80 조 (의무금)

- ① 조합원은 매월 임금 조정액의 1%를 의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② 필요에 따라 투쟁기금을 둘 수 있다.
- ③ 본부 및 지부재정은 투쟁기금 적립금과 상급단체에 납부해야할 의무금을 공제한 나머지에서 본부 40%, 지부 60%로 운영한다.

제 81 조 (회계년도)

- ① 본부의 회계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한다.
- ② 예산승인을 받지 못하였을 때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집행을 하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82 조 (회계규정) 기타 재정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회계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 83 조 (투쟁기금)

- ① 투쟁기금은 매월 조합비의 5%를 적립하며, 대의원회에서 의결하여 추가 징수 할 수 있다. (2016.12.15일 개정)
- ② 본 기금의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투쟁기금 운용규정에 따른다.

## 제 11 장 상 별

### 제 84 조 (포상)

- ① 조합활동에 있어 열성적인 지부를 우수지부로 선정, 포상할 수 있다.
- ② 조합원이 조합의 활동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이 표창할 수 있고, 타기관에 추천할 수 있다.

### 제 85 조 (징계)

- ① 조합원 중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징계할 수 있다.
  1. 조합의 규약 및 규정을 위반한 자
  2. 정당한 조합활동과 조합업무의 집행을 고의로 방해한 자
  3. 조합 공식 기구의 의결 사항을 고의로 훼손하고 위반한 자 (2016.12.15일 개정)
  4. 선거관리규정 제46조를 위반한 자
  5. 조합원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여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징계가 제청된 자
- ② 징계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경고 및 정권은 중앙위원회, 제명은 대의원회 의결로 행한다. (2016.12.15일 개정)
- ③ 1항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위원장은 공사에 해고를 요청할 수 있다.

### 제 86 조 (징계의 종류)

1. 경고
2. 정권
3. 제명

### 제 87 조 (징계의 재심)

- ① 징계대상자는 징계처분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재심신청에 대하여 위원장은 징계 의결권자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2016.12.15일 개정)
- ③ 재심의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징계처분의 효력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2016.12.15일 개정)

제 88 조 (사면복권) 징계된 자가 개정의 정이 있을 때는 조합에 사면복권을 건의 할 수 있다.

## 제 12 장 희생자 구제

제 89 조 (희생자 구제 규정) 조합활동으로 인한 희생자에 대해서는 별도 희생자 구제 규정에 의한다.

### 제 90 조 (희생자 구제기금)

- ① 희생자 구제에 따른 제비용은 규정 제80조 및 83조에 의한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한다.
- ② 1항에 의한 기금 조성만으로 불가피할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 조합비를 추가 징수하여 조성한다. (2016.12.15일 개정)

## 제 13 장 해 산

제 91 조 (해산)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8조에 의한 해산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 동 조항에 따른다.

### 제 92 조 (청산)

- ① 조합은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선포대회에서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청산한다. (2016.12.15일 개정)
- ② 기타 사항은 민법의 사단법인의 청산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2016.12.15일 개정)

# 보 칙 및 부 칙

## 보 칙

제 1 조 (사퇴의 수리) 위원장의 사퇴는 총회에서, 지부장 및 대의원은 위원장에게  
각각 사퇴서를 제출한다.

(2016.12.15일 개정)

## 부 칙

제 1 조 (시행) 이 규약은 대의원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6.12.15일 개정)

제 2 조 (통상관례) 이 규약에 부족한 사항은 조합 규약 및 규정, 종전 본부 과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 3 조 (지부 통합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 1항은 2003년 1월 현재 서울 지역 지부의  
유지 및 통합과 관련하여 해당지부 조합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결과를  
유지한다.

제 4 조 (대의원 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에 의한 대의원의 배정기준 적용은  
2008년 3월 대의원 선출부터 적용한다.

제 5 조 (투쟁기금조성에 관한 경과조치) 제83조의 투쟁기금 적립은 2009년도 회기부터  
적용한다.

제 6 조 (임기) 제26조에 의한 대의원의 임기는 2012년 3월 대의원 선거부터 적용한다.

# 사 무 규 정

제 정	1990년	2월
개 정	1991년	11월 11일
개 정	1993년	4월 8일
개 정	1993년	11월 3일
개 정	1995년	4월 21일
개 정	1997년	1월 19일
개 정	1998년	4월 10일
개 정	2001년	4월 12일
개 정	2002년	11월 25일
개 정	2003년	4월 25일
개 정	2007년	4월 23일
개 정	2013년	4월 23일
개 정	2013년	10월 10일
개 정	2014년	4월 17일
개 정	2014년	11월 4일
개 정	2016년	2월 25일

# 제 1 장 총 칙

## 목 차

제 1 장 총 칙 .....	1
제 2 장 부서의 임무 .....	1
제 3 장 복 무 .....	4
제 4 장 근무시간 .....	4
제 5 장 임원의 보수 .....	4
제 6 장 출 장 .....	5
제 7 장 문서처리 .....	6
제 8 장 간행물과 도서 .....	7
제 9 장 자산관리 .....	8
제10 장 사무인계 .....	8
제11 장 인 사 .....	9
제12 장 인 장 .....	9
부 칙 .....	10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규약 제52조에 의거 한국전기안전공사노동조합(이하 전안노조라 한다)의 사무체계를 확립하여 사무규율을 준수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전안노조 전체 사무처리 및 이에 관련되는 제반사항에 관하여 규약에 정해진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정한다.

제 3 조 (원칙) 본 규정에 의한 사무처리는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한다

# 제 2 장 부서의 임무

제 4 조 (각 부서의 소관업무) 규약 제49조의 규약에 의거 각부서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사무국

1. 각종 문서수발 업무와 분류, 배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재정사업에 관한 사항
5.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6. 비품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각종 회의 준비 및 회의록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항
8. 정보통신 관련업무에 관한 사항
9. 선거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10. 기타 타부서에 속하지 않은 일체 사항

### ② 정책연구국

1. 조합 정책수립 및 정책대안 개발에 관한 사항
2. 정책위원회 운용에 관한 사항

- 3. 노동관계법규 및 기타 법령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4. 규약, 규정의 제정, 개폐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5. 임금 및 경영에 관한 사항

③ 조직쟁의국

- 1. 조직통제 및 확대강화에 관한 사항
- 2. 노동쟁의 활동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 3. 각 지부와의 정보교환 및 유대관계에 관한 사항
- 4. 조직 실태의 조사분석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5. 부당노동행위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④ 선전홍보국

- 1. 조합원의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 2. 교육을 위한 자료의 수집, 관리 및 발행에 관한 사항
- 3. 조합 선전,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 4. 선전, 홍보자료 제작에 관한 사항
- 5. 기관지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사항
- 6. 기타 교육행사에 관한 사항

⑤ 연대사업국

- 1. 타 노조 및 노동운동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2. 대외 집회 및 행사에 관한 사항
- 3.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관련된 활동에 관한 사항
- 4. 정치 및 정당 조직과의 연대활동에 관한 사항
- 5. 기타 대외행사에 관한 사항

⑥ 조사통계국

- 1. 각종 경영정보에 관한 조사연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 2. 임금 및 노동조건에 관한 조사연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 3. 조합원의 의식조사를 통한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
- 4. 각종 통계 및 자료의 수집 정리에 관한 사항

⑦ 후생복지국

- 1. 복지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 2. 조합원의 공제활동에 관한 사항
- 3. 조합원의 보건위생 및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4. 조합원의 복리후생시설의 설치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5. 산업재해 추방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6. 위로규정에 관한 사항
- 7. 기타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⑧ 문화국

- 1. 노동문화 정책의 입안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 2. 각종 문화 행사기획, 진행에 관한 사항
- 3. 문화패 지원에 관한 사항
- 4. 문화단체와의 연대에 관한 사항

⑨ 여성국

- 1. 여성조합원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 2. 여성정책수립 및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
- 3. 여성조합원의 조합활동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 4. 여성조합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5. 여성단체와의 연대활동에 관한 사항
- 6. 기타 여성조합원에 관한 사항

⑩ 단체교섭국

- 1.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계획수립, 운영에 관한 사항
- 2. 노사분쟁에 관한 사항
- 3. 조합원의 고충에 관한 사항
- 4. 희생자구제에 관한 사항
- 5. 각종 대책위원회 운용에 관한 사항

## 제 3 장 복 무

제 5 조 (임원) 본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규약 제46조에 의한 임원을 말하며, 직원은 보직된 집행간부 및 사무직원을 말한다.

제 6 조 (업무지시) 제반 업무지시는 서면 또는 구두로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당해 국장순으로 한다.

제 7 조 (준수사항)

- ① (기밀) 업무상 기밀에 속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허가없이 공문서를 외부에 반출 또는 타인에게 제시 및 사본을 발행할 수 없다.
- ② (성실) 임원 및 직원은 조합의 제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며, 상사의 지시에 의하여 지시된 업무를 성실히 완수하여야 한다.
- ③ (신의) 임원 및 직원은 신의를 준수하고, 품성을 도야하며, 조합의 명예가 훼손될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④ (손해배상) 임원 및 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조합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시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 4 장 근무시간

제 8 조 (근태) 임원 및 직원의 근태는 단체협약에 의하며, 사전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5 장 임원의 보수

제 9 조 (임금) 임원 및 직원의 보수는 공사 보수규약에 의한다

## 제 6 장 출 장

제 10 조 (출장명령) 임직원이 소관 공무로 출장하고자 할 때에는 출장명령 및 여비 지불 명세서(별표 1)의 결재를 받은 후 출발한다.

제 11 조 (출장여비의 지급)

- ① 국내 출장 또는 파견시에는 교통비, 숙박비, 식대 기타 필요한 비용을 실비로 지급한다.
- ② 국외 출장시에는 실교통비, 체제비, 준비금 기타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 ③ 제1항, 제2항의 경우 공사 및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여비를 지원 받았을 때에는 그 차액만 지급하며, 각종 회의 참석에 따른 참가비는 별도로 지급한다.
- ④ 부득이 공사에서 차량을 지원받을 경우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도로비 및 주유시에는 유류비를 지급한다.

제 12 조 (국내출장, 파견)

- ① 임직원의 공무로 국내출장 및 파견에 따른 여비는 별표 2에 의거 지급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당일 업무처리가 가능한 50Km이내 지역은 현지활동비만 지급한다. 다만, 필요시 비숙박 출장으로 처리 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경우 당일 업무처리가 가능한 50Km이상 비숙박 출장으로 처리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숙박출장으로 한다.
- ④ 제2항, 제3항 이외의 지역은 숙박출장으로 한다.

제 13 조 (국외출장)

- ① 임직원의 국외출장은 다음 각호에 대해 심사하여 위원장이 결정한다.
  1. 출장의 필요성
  2. 출장자의 적격성
  3. 출장의 기간 및 시기
  4. 출장인원
  5. 소요예산
  6. 기타 필요한 사항
- ② 임직원의 국외출장 여비는 별표 3에 의거 지급한다.
- ③ 임직원의 국외출장시 조합에서 추가로 100,000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 14 조 (여비의 계산) 여비는 순로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실로에 의하여 지급한다.

## 제 7 장 문서 처리

### 제 15 조 (문서 접수)

- ① 문서의 발신과 접수는 사무국에서 하고 각각 문서 발송부(별표 4) 및 문서 접수부(별표 5)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② 모든 도착문서는 사무국에서 개봉하여 접수인(별표 6)을 날인하고 문서 접수부에 기재한 후 해당국으로 인계한다.

### 제 16 조 (문서기안)

- ① 기안은 기안문 양식(별표 7)을 사용하고, 시행문은 시행문 양식(별표 8)을 사용한다.
- ② 내부보고 또는 결재문서에 기안용지를 사용하며, 수신란에 “내부보고” 또는 “내부결재”로 표시하여야 한다.

### 제 17 조 (결재)

- ① 기안문서(공람문서 포함)는 순서에 따라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필요로 할 경우 그 결재만으로 시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위원장이 전결을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결재는 소정의 결재란에 서명 또는 날인으로 표시한다.

### 제 18 조 (대결 및 후결) 위원장이 출장, 휴가, 기타 사고로 인하여 부재중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대결문서중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위원장의 후결을 받아야 한다.

### 제 19 조 (문서발송)

- ① 발송문서의 발신인 란에 본부에 한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노동조합이라 기재하고, 각 지부에서는 자체 지부명만을 기재한다. 단, 지부에서도 대외 기관으로 발송되는 공문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노동조합을 기재한 바로 아래에 자체 지부명을 기재한다.
- ② 모든 발송공문은 사무국이 관리하는 문서 발송부에 발송번호를 등재하고 직인을 찍은 후 발송한다. 단, 대외로 발송하는 공문의 경우 발송인을 추가한다.

③ 발송문서는 문서 발송부에 발송번호를 붙이고 문서번호앞에 (전안노조)를 붙인다. 단, 지부는 지부명과 지부의(支)를 붙인다.

예) 본사지부⇒(본사지), 동부지부⇒(동부지), 대전충남지부⇒(대전충남지)

④ 조합의 모든 공문발송은 위원장 명의로 하고, 지부는 지부장 명의로 한다.

제 20 조 (준용) 팩시밀리나 컴퓨터등의 사무기기에 의한 문서의 수신과 발신에 대해서도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컴퓨터를 이용한 전자문서로 발신하는 경우 직인 및 발송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 21 조 (직인) 직인의 보관 및 관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무국장이 대행한다.

제 22 조 (편찬 및 도서) 완결문서는 업무별로 분류 날짜순에 따라 철하거나, 연도별로 편찬 보관한다.

제 23 조 (보관문서의 폐기) 문서의 보관과 폐기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주무국장이 처리 한다.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문서는 그 법령에 따른다.

## 제 8 장 간행물과 도서

### 제 24 조 (간행물)

- ① 기관지와 각종 간행물을 발간한다.
- ② 기관지의 발간인은 위원장이 된다.

제 25 조 (도서구입) 조합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도서를 구입 관리한다.

제 26 조 (정리 및 보관) 구입 또는 기증받은 도서는 조사통계국에서 도서대장(별표 9)에 기재하고 정리 보관한다.

제 27 조 (보존) 도서는 영구보존을 원칙으로 한다. 단, 손망실이 된 도서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처리한다.



## 제 9 장 자 산 관 리

제 28 조 (대장의 비치) 조합 자산관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무국에서 고정자산 대장(별표 10)과 비품 및 장비대장(별표 11)를 작성 비치한다.

제 29 조 (취득 및 처분)

- ① 고정자산의 취득은 매매, 교환, 증여, 대체등에 의한 것을 말한다.
- ② 조합자산은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교환, 양도, 대부, 출자 또는 지급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 ③ 자산관리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불용 결정을 한다.

## 제 10 장 사 무 인 계

제 30 조 (인계서) 임직원의 퇴직, 휴직 또는 근무상 변동이 있을 때는 그 담당 사무의 서류, 물건 및 그 개요와 미결사항등을 열거하여 장래의 처리요령 또는 자기 의견을 첨부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제 31 조 (특수인계) 금전등 회계처리 및 자산관리에 종사하는 자는 사재금액, 지불채무, 자산현황 등 업무의 인수인계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 32 조 (절차)

- ① 사무인수인계를 완료할 때에는 인계자, 인수자 및 입회자가 연서한 인계인수서 3통을 작성하여 인계자, 인수자가 각 1통씩을 소지하고, 나머지 1통은 입회자가 필요한 처리를 필한 후 즉시 사무국에 회부하여 본부에서 보관한다.
- ② 사무인수인계시 입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장 : 대표회계감사
  2. 지부장 : 지부회계감사 1인
  3. 수석부위원장 : 위원장
  4. 본부국장 : 위원장 또는 수석부위원장

제 33 조 (서식) 사무인수인계 서식은 (별표 12)에 의한다.

## 제 11 장 인 사

제 34 조 (직원채용) 전임직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되 특수근무자를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채용할 수 있다.

제 35 조 (제출서류) 조합본부로 전임된 자는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 제 12 장 인 장

제 36 조 (인장) 조합의 인장은 인장등록표(별표 13)와 같다.

제 37 조 (인장 종류) 등록인장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조합 직인
2. 노동조합 계인
3. 노동조합 대표자 인장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인

제 38 조 (인장보관 및 관리) 인장의 보관 및 관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무국장이 대행한다.

(별표 1)

부 칙

제 1 조 (시행) 이 규정은 통과일로 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이 규정 제12조는 본사(본부)가 전북으로 이전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 3 조 이 규정 별표2는 2014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출장명령 및 여비지불명세서

결 재	담 당	단체교섭 국	조직쟁의 국	정책연구 국	사무국장	위 원 장					
소	속	직	위	성	명	지출금액	수령인	출 장 일 정		숙박지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출장기간 ( )박 ( )일간			
출 장 지							출장용무				
이용교통편									계정과목		
여 비 산 출 내 역	현 지 활동비								목		
									절		
	식 비								세		
									전 불 금		
	숙박비								₩		
	교통비								여비정산금액		
	합 계								₩		
비 고											

한국전기안전공사노동조합

(별표 2)

### 국내여비 정액표

(단위 : 원)

구분 자격	교 통 비				현 지 활동비	숙박료	식 비
	철 도	선 박	항 공	자동차	1일당	1야당	1일당
전조합원	실 비	실 비	실 비	실 비	20,000	특별시:70,000 광역시:60,000 시, 도:50,000	20,000

(별표 3)

### 국외여비 정액표

(단위 : \$)

구분 자격	교 통 비	현 지 활동비	숙박비	식 비	준비금	비 고
전조합원	실 비 (2등정액)	25	130	107	285	

1. 규정상 미비점은 공사 국외출장 관례를 적용한다.

(별표 4)

### 공 문 발 송 대 장

발송번호	발송년월일	발송부서	제 목	수신처	비 고

한국전기안전공사노동조합

(별표 5)

### 공 문 접 수 대 장

접수번호	접수년월일	발신처	제 목	수령부서	문서번호

한국전기안전공사노동조합

(별표 6)

접 수 인

(별표 7)



우565-850 전북 완주군 이서면 오공로 12 / 전화(063)716-2751 / 전송(063)716-9652

문서번호 (전안노조) -			
시행일자 20 . . .	보	존	년
(경 유)			
수 신	NO.		
참 조	기 안		
제 목			협조

(별표 8)



우565-850 전북 완주군 이서면 오공로 12 / 전화(063)716-2751/전송(063)716-9652/www.kescowu.or.kr

문서번호 (전안노조) -	결			결		
시행일자 20 . . .	재			재		
수신	일	자	.	.	.	
참조	접	간	:	공		
	수	번	호	람		
	처	리	부			
	담	당	자			

제목

한국전기안전공사노동조합 위원장

(별표 9)

### 도 서 대 장

번호	취득일자	도서명	저자명	언어판별	부수	비고

한국전기안전공사노동조합

(별표 10)

### 고 정 자 산 대 장

소재지	품명	용도	수량	취득년월일	취득가격	비고

한국전기안전공사노동조합

(별표 11)

### 비 품 및 장 비 대 장

분류번호	품명	규격	취득년월일	취득가격	내용년수	비고

한국전기안전공사노동조합

(별표 12)

# 인 계 인 수 서

200 . . . . .

인계자 : 직책                      성명                      인  
 인수자 : 직책                      성명                      인  
 입회자 : 직책                      성명                      인

## 1. 현금 및 예금현황

구 분	금 액	비 고
현 금		
예 금		
계		

## 2. 예금관련 통장

예 금 처	계 좌 번 호	예 금 액

## 3. 비품현황

일련번호	품 명	규 격	상 태	수 량	비 고
			상·중·하		
			상·중·하		
			상·중·하		
			상·중·하		
			상·중·하		
			상·중·하		
			상·중·하		

4. 사용 공인(직인) 목록

구 분	직 인	비 고
노동조합 직 인		
노동조합 계 인		
노동조합 인 감		
선거관리 직 인		

5. 각종 규약집

6. 진행사항 및 사업

7. 기타 인계사항

(별표 13)

인 장 등 록 표

노동조합 직인

노동조합 계인

노동조합 인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인

## 회 계 규 정

제 정	1991년	11월	11일
개 정	1993년	4월	8일
개 정	1993년	11월	3일
개 정	1995년	4월	14일
개 정	1996년	2월	26일
개 정	1996년	12월	4일
개 정	1998년	4월	10일
개 정	2000년	4월	17일
개 정	2001년	4월	12일
개 정	2002년	11월	25일
개 정	2003년	4월	25일
개 정	2004년	4월	9일
개 정	2009년	4월	27일
개 정	2010년	7월	19일
개 정	2013년	10월	10일
개 정	2014년	11월	4일
개 정	2016년	2월	25일
개 정	2016년	4월	15일
<u>개 정</u>	<u>2016년</u>	<u>12월</u>	<u>15일</u>



## 제 1 장 총 칙

### 목 차

제 1 장 총 칙 .....	1
제 2 장 예산 및 결산 .....	1
제 3 장 수 입 .....	3
제 4 장 회계처리 .....	3
제 5 장 회계장부 및 전표 .....	4
제 6 장 회계감사 .....	4
제 7 장 특별회계 .....	5
제 8 장 계 약 .....	5
제 9 장 관 공 비 .....	6
부 칙 .....	7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규약 제82조에 의거 한국전기안전공사노동조합(이하 전안노조라 한다)의 각종 회계기준을 확립하여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규약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과 회계에 관련된 사항은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 3 조 (세출의 근거) 전안노조의 세출은 당해 회계년도 조합비와 전년도 이월금의 한도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 4 조 (회계년도) 회계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제 5 조 (회계의 구분)

① 전안노조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정한 기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2.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3. 기타 일반의 세입과 세출을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제 6 조 (회계의 책임) 조합의 모든 회계관리의 책임은 위원장이 한다

## 제 2 장 예산 및 결산

제 7 조 (예산편성의 기준) 예산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1. 전안노조 규약 및 규정

2. 조합의 당해 회계년도 사업계획

3. 조합의 당해 회계년도 편성기준

- 4. 조합의 전년도 집행실적
- 5. 상급단체 의결사항
- 6. 예산은 관, 항, 목별로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 8 조 (예산편성) 매 회기년도 예산(안)은 제7조에 의거 예산편성 계정과목(별표 1)을 편성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얻는다. 지부는 지부총회의 의결을 얻는다.

제 9 조 (예비비)

-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예비비는 세출예산의 3%이내에서 계상한다.
- ③ 예비비는 사용전에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전에 집행하고 추후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 10 조 (예산의 전용) 예산에 정한 각 항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경우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전용할 수 있다.

제 11 조 (추가예산의 편성) 전안노조의 운영상 불가피하여 추가예산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어 각종기금에서 충당하여 추가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 12 조 (예산의 불성립시 예산집행)

- ① 노조의 회계개시가 매년 3월이고, 규약 제23조에 의거 대의원회를 4월에 개최해야 하므로써 예산(안)이 대의원회에서 확정 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 13 조 (이월금의 처리) 전년도 이월금은 당해년도 수입재원으로 한다.

제 14 조 (결산보고) 위원장은 회계년도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 3 장 수 입

제 15 조 (재원) 조합의 재원은 규약 제79조와 회계규정 제13조에 의거 대의원회에서 정한 일정액으로 한다.

제 16 조 (수입금의 예치) 모든 수입금은 수입금이 인식되는 그 당일에 조합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 17 조 (수입의 종류) 수입의 종류는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와 이자수입, 잡수입, 차입금으로 한다.

제 18 조 (차입금)

- ① 일반 회계에서 자금 부족이 발생한 경우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투쟁기금에서 그 자금을 차입 사용할 수 있으며, 차기 대의원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당회회계년도의 일반회계에서 이를 상환하여야 하며, 무이자로 한다.

## 제 4 장 회 계 처 리

제 19 조 (지출의 절차) 세출예산에 의한 지출은 사전에 계획의 품위가 있거나 지출 원인 행위가 완료된 후에 행하여야 한다.

제 20 조 (현금보관) 조합은 지출 집행을 위해 현금보유 한도를 본부는 20만원, 지부는 10만원 이내에서 할 수 있다.

제 21 조 (전결지출) 예산범위 내에서 모든 지출을 집행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제를 득 하여야 한다. 다만, 20만원 이하의 지출 집행은 사무국장 전결로 집행할 수 있다.

## 제 5 장 회계장부 및 전표

제 22 조 (회계장부) 본부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1. 조합비의 총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총 계정원장
2. 금전출납부 (전산화서식)
3. 전표 (지출결의서, 수입결의서)

제 23 조 (전표종류) 모든 거래전표는 지출결의서, 수입결의서로 한다.

제 24 조 (기표의 요령) 전표는 발행일자, 과목, 거래처, 품명, 수량, 금액, 거래내용을 명기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25 조 (오류정정) 자구나 금액을 정정할 때에는 원본에 붉은선(=)을 긋고 그 선 위에 정정 날인 한다. 단, 전표의 금액은 정정할 수 없다.

제 26 조 (지출증빙)

- ① 자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거래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습, 기타이유로 거래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자세한 사항을 전표에 기입한 후 조합영수증(별표 4)에 거래자의 서명확인을 받는다.
- ② 각종 행사 및 회의(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대의원회](#) 등)후 발생하는 뒷풀이 금액은 1인당 3만원 내외로 한다.

## 제 6 장 회 계 감 사

제 27 조 (회계감사) 회계감사는 매년 9월과 다음 해 3월에 실시한다.

제 28 조 (감사요령) 회계감사는 감사를 실시할 때 다음 각호에 유의한다.

- ① 수입, 지출행위의 적부와 규약, 규정에 위반한 수입, 지출행위의 유무
- ② 결산서, 손익계산서등 장부의 기재액과 장부의 합계액 또는 잔액의 차이 여부

- ③ 장부상의 계산, 오기 유무
- ④ 장부와 전표의 기재사항 차이 여부
- ⑤ 전표의 기재요건 유무
- ⑥ 영수증과 기타 증빙서류 첨부 유무
- ⑦ 기타 필요한 사항

제 29 조 (감사보고) 회계감사는 감사를 실시하고 지체없이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정기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 7 장 특 별 회 계

제 30 조 (운영규약) 본부는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별한 자금을 보유 운영할 때에는 별도 운영규정을 제정한다.

제 31 조 (재원) 특별회계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쟁기금은 규약 제83조의 기금으로 한다.
2. 희생자구제기금은 규약 제90에 의한다.
3. 투쟁기금은 특정한 사업으로 발생한 수입금으로 한다.

제 32 조 (집행) 각 기금운용규정에 의해 집행한다.

## 제 8 장 계 약

제 33 조 (사전준비) 계약 목적물에 대하여 예산 집행자가 충분한 시장조사를 실시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제 34 조 (계약방법) 단일품목으로 100만원이상 물품을 구매할 경우 2개업체 이상의 견적을 받아 예정가격의 근사치에 맞는 업체를 내부결재후 선정한다.

## 제 9 장 판 공 비

제 35 조 (업무추진비) 본부 임직원 및 지부장에게 다음 각호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한다.

1. 위 원 장 : 매월 100만원
2. 수석부위원장 : 매월 80만원
3. 전임국장 : 매월 60만원
4. 비전임국장 : 매월 5만원
5. 사무직원 : 매월 5만원
6. 지 부 장 : 세입예산의 20% 이내로 한다. 다만, 지부실정에 따라 증.감 조정하여 관계 의결기구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 부 칙

제 1 조 (통상관례) 본 규정의 미비점은 노동관계법과 통상관례에 의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본 규정의 시행전 사항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 2-1 조 제4조에 관한 사항은 '96년도 회계예산 편성시부터 시행한다.

제 3 조 (시행) 본 규정은 통과일로 부터 시행한다.

제 4 조 (시행) 제22조에 관한 사항은 2010. 6. 1 시행한다.

(별표 1)

## 예산편성계정과목

수입지부

과 목			예산액	산출근거
관	항	목		
수입	조합비	조합비		
		잡수입		
	이자수입			
	총계			

지출지부

과 목			예산액	산출근거
관	항	목		
의무금	맹비	연맹비		
		환경에너지 분과위원회		
		총계		
	운영비	유지비	통신비	
소모품비				
비품장비				
도서인쇄비				
수리비				
지급수수료				
잡비				
지급이자				

과 목			예산액	산출근거
관	항	목		
	관공비	기밀비		
		총계		
	사업비	국사업비	조직국사업비	
연대사업국사업비				
총무국사업비				
여성국사업비				
정책국사업비				
조사통계국 사업비				
선전홍보국 사업비				
단체교섭 사업비				
후생복지국 사업비				
문화국사업비				
행사비		제반행사비		
지원비		대외지원비		
총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총계			
	합계			

(별표 2)

## 지 출 결 의 서

결	담 당	사무국장	위원장
재			

일자 :    년    월    일

계정 과목	관	목	지출 형식
	항		
지출처			
금 액	(₩                    )		
적요			

일반회계

(별표 3)

## 수 입 결 의 서

결	담 당	사무국장	위원장
재			

일자 :    년    월    일

계정 과목	관	수입 형식
	항	
수입처		
금 액	(₩                    )	
적요		

일반회계

(별표 4)

## 영 수 증

소 속 :

직 책 :

연락처 :

성 명 : (인)

일금 : \_\_\_\_\_ 원정

(₩ )

상기 금액을 (으)로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한국전기안전공사노동조합 위원장 귀하

## 선 거 관 리 규 정

제 정	1990년 2월
개 정	1991년 11월 11일
개 정	1993년 4월 8일
개 정	1993년 11월 3일
개 정	1995년 4월 21일
개 정	1997년 1월 19일
개 정	1998년 4월 10일
개 정	2001년 4월 12일
개 정	2002년 11월 25일
개 정	2003년 4월 25일
개 정	2003년 10월 7일
개 정	2004년 4월 23일
개 정	2014년 11월 4일

# 제 1 장 총 칙

## 목 차

- 제 1 장 총 칙 ..... 1
- 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 1
- 제 3 장 공 고 ..... 3
- 제 4 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 ..... 4
- 제 5 장 입 후 보 ..... 5
- 제 6 장 구역 및 보궐선거, 재선거 ..... 7
- 제 7 장 선거운동 ..... 8
- 제 8 장 투표와 개표 ..... 11
- 제 9 장 이의신청 ..... 15
- 부 칙 ..... 16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규약에 의거 한국전기안전공사노동조합의 각종 선거를 공정하고, 민주적인 운영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근거) 본 규정은 규약 제43조에 의거하여 제정한다.

제 3 조 (적용범위)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거에 적용한다.

1. 규약 제46조의 각급 임원선거 및 상급단체에 파견 할 대의원 선거
2. 지부장, 대의원, 지부회계감사 선거

제 4 조 (선거) 조합의 각종선거는 각 기구의 구성원으로써,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 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 5 조 (구성)

- ① 선거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 구성한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3인이내로 한다
  2. 지부선거관리위원회 - 3인이내로 한다.
-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업무에 공정을 기할 수 있는 조합원중에서 추천하되 본부 집행부 임.직원 및 지부집행간부는 제외한다.

제 6 조 (위원의 위촉) 선거관리를 위하여 각급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하며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60일전에 위원장이 위촉한다.
2.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5일전에 지부장이 위촉한다.



제 7 조 (기능)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한 책임을 지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선거의 공고
2. 입후보자 및 참관인 신청등록, 자격심사, 사퇴수리, 및 기호추첨
3. 선거인명부 작성 및 관리업무
4. 투표 및 개표업무
5. 투표소 및 개표소 설치
6. 각종 선거관련 안내문 게시
7. 당선자의 확정
8. 선거 투개표록의 작성 및 보고
9. 선거운동의 통제 및 승인
10. 선거록 작성 및 보관
11. 선거와 관련한 이의신청 판정
12.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업무

제 8 조 (선거관리위원장 및 간사 선출) 각종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장이 간사 1명을 지명한다.

제 9 조 (임무)

-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련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단, 위원장의 부재 및 유고시 위원중 1인이 서명인이 된다.
-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선거사무 일체를 담당한다.

제 10 조 (임기) 각급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개표 종료일로부터 5일이 경과되면 자동 해산한다. 단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 동안 업무를 계속한다.

제 11 조 (결원보충) 각급 선거관리위원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동 규정 제6조에 의거 기간에 상관없이 즉시 위촉한다.

제 12 조 (위원사퇴) 선거관리위원이 임원 및 지부장, 대의원, 중앙 및 지부회계감사에 입후보하고자 할 때에는 입후보 등록 10일전에 위원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제 13 조 (의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4 조 (업무지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에 대한 협조요구가 있을 경우 집행부는 우선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 15 조 (비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용은 본부가 부담하고, 지부선거관리위원회의 비용은 지부에서 부담한다.

제 16 조 (중립) 각급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에 있어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하며, 특정인의 당락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 제 3 장 공 고

제 17 조 (공고)

- ① 위원장의 선거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실시 25일전에 선거일 및 절차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지부장 및 대의원의 선거와 관련하여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실시 7일전에 선거일 및 절차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18 조 (입후보자 확정공고)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입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한 후 선거실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지부장 및 대의원 입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한 후 선거실시 2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 4 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 19 조 (선거권) 선거권은 규약 제2장에 의거 조합원자격을 취득한 후 선거인명부 작성 당일까지의 조합원으로 한다.

제 20 조 (선거권의 제한)

- ① 휴직 또는 정직 등으로 선거인명부 작성 전월에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
- ② 퇴직 희망자의 퇴직일이 선거일인 경우
- ③ 상벌규약에 의해 정권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해당 의결기관으로부터 복권을 받지 못한 경우
- ④ 제1항의 경우라도 투표당일 이전에 복직 된 경우는 선거권이 있다.

제 21 조 (선거인명부 작성)

- ① 선거인명부는 별표 제1호 서식에 의해 선거일시 5일전에 지부에서 작성한다 .
- ② 선거인명부는 지부선거관리위원장이 서명 날인한다.

제 22 조 (명부열람 및 수정)

- ① 조합원이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 할 수 있다.
- ② 선거인명부 열람은 선거일시 1일전으로 하며, 열람시간은 0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단, 선거일이 월요일인 경우 선거일 전주 금요일까지 한다.
- ③ 조합원이 선거인명부중 착오 또는 누락사항을 발견, 선거관리위원회에 수정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수정 또는 추가로 기입하고, 비교란에 전말을 명시한 후 날인한다.

제 23 조 (부재자 신고)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써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 3일전까지 별표 제2호 서식에 의거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다.

1. 선거당일 근무 조합원
2. 파견 조합원
3. 휴가, 출장의 기타 사유등으로 선거당일 투표할 수 없는 자

## 제 5 장 입 후보

제 24 조 (입후보 자격)

- ① 위원장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규약 제2장에 위배되지 않는 자 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 선거공고 10일전에 해당 직위를 사퇴하여야 한다.
  1. 규약 제46조 2호, 3호의 임원
  2. 지부장
  3. 대의원
  4. 회계감사위원
  5. 선거관리위원
- ② 지부장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규약 제2장에 위배되지 않는 자 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선거공고 5일전에 해당 직위를 사퇴하여야 한다.
  1. 대의원
  2. 회계감사위원
  3. 선거관리위원

제 25 조 (입후보 등록) 위원장, 지부장, 대의원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각급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표 제3호 서식에 의거 등록하고, 등록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제 26 조 (등록서류) 위원장, 지부장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 하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자 기 소 개 서 (별표 제4호 서식) 1통
2. 입후보등록신청서(별표 제3호 서식) 1통
3. 추 천 서(별표 제5호 서식) 1통
4. 사 진 2매

제 27 조 (추천인)

- ① 위원장, 지부장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별표 제5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1. 위원장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3개지부 이상, 100명에서 200명 이내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2. 지부장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지부 조합원의 1/6이상 1/5이내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② 회계감사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중앙회계감사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선거당일 대의원의 추천을 받는다.
  - 2. 지부회계감사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선거당일 조합원의 추천을 받는다.
- ③ 제1항, 제2항의 경우 조합원은 각각에 입후보하려는 자에게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다. 단, 중복추천인 경우 모두 무효화 한다.

제 28 조 (추천 및 등록기간)

- ① 위원장의 추천 및 등록기간은 선거공고일로부터 7일간으로 하며, 마감시간은 17:00까지로 한다.
- ② 지부장 및 대의원의 추천 및 등록기간은 선거공고일로부터 5일간으로 하며, 마감시간은 17:00까지로 한다.

제 29 조 (추가등록) 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 후보자 등록이 없는 경우, 1차에 한하여 3일간 후보자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30 조 (입후보자 확정)

-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동 규정 제26조의 등록서류를 규약과 규정을 근거로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 입후보자를 확정하고, 동 규정 제18조에 의한다.
- ② 결격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결함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본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고, 등록마감 다음날 12시까지 자료를 보완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경우 등록마감 다음날 12시까지 자료를 보완하지 못한 경우 입후보 자격이 상실된다.

제 31 조 (입후보 사퇴)

- ① 입후보 등록확정 후 또는 확정전이라도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후보자 본인이 사퇴서를 작성하여 직접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사퇴서를 접수 즉시 등록신청서 명단에서 삭제하여야 하며, 이 절차가 끝나면 사퇴가 확정된 것으로 본다.

## 제 6 장 선거구역 및 보궐선거, 재선거

제 32 조 (선거) 위원장 및 지부장 선거는 임기만료전에 총회를 소집하여 각 지부에서 동시에 실시한다.

제 33 조 (선거구)

- ① 위원장 선거에 관한 선거구는 전국을 선거구로 한다.
- ② 지부장의 선거구는 규약 제13조 제1항에 의한 각 지부를 선거구로 한다.
- ③ 대의원의 선거구는 규약 제25조 제2항에 의한 단위 사업장을 선거구로 한다.

제 34 조 (선거권의 변경) 동 규정 제33조 제2항의 경우 투표인명부 작성 이후에 인사이동이 된 경우 규약 제9조, 제10조에 해당하지 않는 조합원에 한해 이동 사업장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35 조 (보궐선거)

- ① 조합활동으로 인한 상급단체 공적취임, 파견, 구급, 기타 한시적 사유로 유고시에는 규약 제48조, 제70조 규약에 따른다.
- ② 제1항의 사항을 제외한 위원장, 지부장, 대의원이 임기중 사망, 사퇴등 기타 사유로 유고가 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 ③ 제2항에 의한 위원장 보궐선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 1. 위원장의 유고발생이 최종 확인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각 지부별로 동시에 실시한다.
  - 2. 위원장의 유고발생이 확정된 날로부터 잔임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차기총회에서 선출한다.
  - 3. 보궐선거에 관한 사항은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④ 제2항에 의한 지부장의 보궐선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 1. 지부장의 유고발생이 최종 확인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실시한다.
  - 2. 지부장의 유고발생이 확정된 날로부터 잔임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차기총회에서 선출한다.
  - 3. 보궐선거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지부집행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⑤ 제2항에 의한 대의원의 보궐선거는 지부집행부의 결정에 따른다.

⑥ 보궐선거에 따른 선거절차는 본 규정에 준한다.

제 36 조 (재선거)

①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1. 선거무효가 확정된 경우
2. 당선무효가 확정된 경우
3. 해당선거구에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
4. 이의 신청에 의해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재선거가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5.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 사퇴 또는 사망한 경우
6. 해당선거구에 단일 입후보하여 과반수미달인 경우

② 제 1항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2.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마감 후 입후보자와 상의하여 합동연설회의 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협의 한 후 그 내용을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3. 합동연설회에서 연설통서는 연설회마다 추첨을 하여 결정한다.
4. 합동연설회는 입후보자 1인에 30분 범위내에서 실시한다.
5. 제4호의 합동연설회마다 1인에 한하여 찬조연설을 10분 범위내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찬조연설자의 명단은 합동연설회 전일 근무시간까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연설회의 내용을 녹취하여야 한다.
7. 합동연설회의 홍보등 진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담한다.
8.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연설회에서 동 규정 제4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불응시에는 연설을 중지시킨다.

제 41 조 (개인연설회)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중 자유롭게 개인연설회를 할 수 있다.

제 42 조 (방문선거운동)

- ①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은 각급 조직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 선거관리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이, 선거관리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지회장이 선거업무를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제 43 조 (인터넷 선거운동)

- ① 위원장 선거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본부의 홈페이지와는 별도로 선거관련 사이트를 운영하여야 한다.
- ② 각급 선거에서 후보자의 정견 및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이트에 링크를 요청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동 규정 제46조의 사항에 준하여 심의를 한 후 링크시켜 주어야 한다.
- ③ 제2항의 경우 개인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은 후보자가 부담한다.

제 44 조 (기타 선거운동) 전화 및 핸드폰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제 7 장 선거 운동

제 37 조 (선거운동)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사무를 집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선거운동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통제할 수 있다.

제 38 조 (기회균등)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소견발표에 있어서 기회를 균등하게 주어야 하며, 선거운동에 있어서 공정하고, 민주적인 관리로 통제, 조정한다.

제 39 조 (운동기간) 선거운동 기간은 입후보자 확정 공고 일부터 선거당일 총회 개최전까지로 하며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 40 조 (합동연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합동연설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1회이상 합동연설회를 후보간의 합의하에 개최하여야 한다.

제 45 조 (개인 홍보물)

- ① 각종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는 개인 홍보물을 제작하여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친 홍보물 만 배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선거관리위원장은 개인 홍보물에 대하여 동 규정 제46조의 사항에 준하여 심의를 한 후 인가 해주어야 한다.
- ② 해당 선거관리위원장의 인가가 없는 개인 홍보물은 불법 홍보물로 간주하여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모두 회수하여 소각처리 한다.
- ③ 제2항의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2회까지 - 경고
  2. 3회 적발 - 후보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
- ④ 개인 홍보물에 대하여 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 46 조 (운동제한)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은 어떠한 사유로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폭력, 공갈, 납치등
2. 중상모략 및 인신공격
3. 금품제공 및 향홍제공
4. 선거관리 방해
5. 사전 유인물배포
6. 허위자료 유포
7. 기타 조합원의 권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제 47 조 (선거무효)

- ① 각급 선거에 있어서 동 규정 제46조 제1호의 행위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행사가 저해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합동회의에서 입후보 등록취소 및 선거무효를 결정할 수 있다. 단, 선거관리위원의 결원 등 불공정성이 있다고 판단 될 때에는 중앙집행위원회와 합동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위반자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 ② 각급 선거에 있어서 동 규정 제46조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명선거 분위기를 흐리게 하거나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 될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합동회의에서

무효로 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 제 8 장 투표 및 개표

제 48 조 (투개표장소) 투표 및 개표장소는 원칙적으로 회의장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 49 조 (투표용지)

- ① 투표용지(별표 제6호 서식)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단,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찬반투표용지로 대신 한다.
- ② 위원장의 투표용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부장 및 대의원의 투표용지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 ③ 투표용지는 후보등록 마감 후 즉시 제작하여야 한다.
- ④ 후보자의 기호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 ⑤ 기타 투표용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한다.

제 50 조 (투표방법)

- ① 조합원(대의원)은 투표장소에 들어 올 때 사원증을 지참하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시하고, 선거인명부와 대조한 후 서명을 받고, 투표용지(별표 제6호 서식)를 교부받아 기표장으로 들어가 투표한다.
- ② 타인의 사원증으로는 투표를 할 수 없다. 단, 사원증을 지참하지 않은 조합원은 주민등록증 또는 면허증등으로 본인을 확인한 후 투표할 수 있다.
- ③ 제1항, 제2항의 경우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주변 동료의 신분보장으로 투표할 수 있다.
- ④ 기타 투표절차에 의한 방법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⑤ 동 규정 제23조에 의한 부재자 투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부재자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선거인 명부에 이를 표시하고, 부재자가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의 원칙하에 인편 및 우편등을 통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부재자투표는 투표당일, 투표종료전까지의 도착분에 한해 유효하다.
  3. 제1호에 의한 투표는 1차 투표에 한해 적용되며, 2차 투표는 제외한다.

제 51 조 (기표방법)

- ① 위원장, 지부장, 지부회계감사 선출에 따른 투표는 해당 투표용지에 지지하는 1인에게만 기표하여야 한다. 단, 단독후보일 경우 찬반 기표란중에 한군데에만 기표한다.
- ② 대의원 선출에 따른 투표용지의 기표방법은 규약 제24조의 대의원 배정기준에 의해 해당 사업장별로 배정된 대의원의 숫자만큼 연기명으로 기표한다. 즉, 2명 배정이면 2명까지만 기표한다.
- ③ 중앙회계감사의 선출에 따른 투표용지의 기표방법은 규약 제45조에서 정한 숫자만큼 연기명으로 기표한다. 즉, 2명 배정이면 2명까지만 기표한다.
- ④ 상급단체과건대의원 선출에 따른 투표용지의 기표방법은 상급단체 대의원 배정기준에 의해 배정된 대의원의 숫자만큼 연기명으로 기표한다. 즉, 10명 배정이면 10명까지만 기표한다.

제 52 조 (투표함 확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전에 투표함 내부를 참관인에게 확인케 한 후 봉인하고, 투표개시를 선언한다.

제 53 조 (참관인)

- ① 투표 및 개표 참관인은 입후보자가 지명한 각 1명으로 하여금 투표 및 개표상황을 참관케 할 수 있다.
- ②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종료후 개표 직전에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참관인에게 확인케 한 후 개표를 선언한다.
- ③ 투표 및 개표진행에 있어서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제 54 조 (개표)

- ① 개표는 선거관리위원만이 할 수 있으며, 해당 선거관리위원장의 투표 종료 선언 후 실시한다.
- ② 위원장 선거의 개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투표장에서 투표가 종료되면,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선거인명부의 투표인 수와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맞는지 확인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지부의 투표종료 보고를 받은 후 지부선거관리

위원회에 개표를 지시한다.

3. 위원장 선거의 개표는 전국동시 개표를 원칙으로 한다.
  4. 개표가 종료되면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결과에 대하여 선거투개표록(별표 제7호 서식)을 작성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즉시 전통보고하고, 모사전송(FAX) 한다.
- ③ 지부장, 대의원, 지부회계감사의 개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표장에서 투표가 종료되면,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선거인명부의 투표인 수와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맞는지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개표를 시작한다.
  2. 각종 선거의 개표가 종료되면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지부장 및 지부회계감사의 선거 결과는 별표 제7호 서식으로, 대의원의 선거결과는 별표 제8호 서식을 작성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즉시 전통보고하고, 모사전송(FAX)한다.

제 55 조 (무효표) 다음 각 호의 투표용지는 무효로 한다.

1.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2. 어느 후보자에게도 기표를 하지 않은 경우(백지 투표)
3. 위원장, 지부장, 지부회계감사의 선거에서 2인 이상의 후보자에게 기표한 경우
4.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를 하였는지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
5. 투표자가 투표용지를 수령한 후 투표소를 이탈하였을 경우
6. 투표용지에 해당 선거관리위원의 날인이 없는 경우
7. 대의원 및 중앙회계감사의 배정 인원보다 많게 기표한 경우
8. 지정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고, 문자나 문형을 기입한 경우

제 56 조 (선거 투개표록, 선거인명부 및 투표용지)

- ① 위원장 선거에 대한 선거 투개표록, 선거인 명부, 투표용지의 원본을 취합하여 봉인한 후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기로 우송하고, 선거 투개표록 및 선거인명부 사본을 작성하여 당선확정 후 3개월 동안 지부에서 보관한 후 폐기한다. 단,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그 결과가 있을 때까지 보관한다.
- ② 제1항에 의해 수령한 선거관련 자료는 당선확정 후 3개월 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관한 후 폐기한다.
- ③ 지부장, 대의원, 지부회계감사 선거에 관한 자료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부에 제출하고, 지부는 당선확정 후 3개월 동안 보관한 후 폐기한다.

#### 제 57 조 (당선자 확정)

- ① 위원장 선거의 당선자 확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부의 개표결과를 취합, 확인한 후 당선자를 전 선거권자에게 공표한다.
- ② 지부장, 대의원, 지부회계감사의 당선자 확정은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자를 공표한다.
- ③ 중앙회계감사, 상급단체파견대의원의 당선자 확정은 대의원회에서 당선자를 공표한다.

#### 제 58 조 (당선확정 기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를 다음 각 항에 의거 확정한다.

- ① 모든 선거의 당선기준은 재적조합원 과반수 참석과 투표인원 과반수 득표로 확정한다.
- ② 위원장 및 지부장, 지부회계감사의 당선자 확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합으로 1차 투표결과 과반수 미달인 경우, 2차 투표를 행하되 최고 득표자와 차위 득표자,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득표자로 확정 한다.
  2.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와 동 득표를 한 경우, 1차와 2차 투표결과를 합한 최다득표자에 대하여 신임투표로 결정한다.
  3. 2차 투표의 경우 기호는 1차 투표의 기호를 사용한다.
  4. 단일 입후보하여 과반수가 미달한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며, 이 경우 재선거에 기존의 후보자는 출마할 수 없다.
- ③ 대의원 및 중앙회계감사의 당선자 확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반수 득표자가 규약 제25조의 배정인원을 초과할 경우 다득표순으로 배정된 인원만 당선자로 확정한다.
  2. 과반수 득표자가 배정인원에 미달한 경우, 1차 투표의 과반수 득표자를 제외하고, 부족 인원의 차순위 득표자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부족인원만큼 다득표 순으로 당선을 확정한다.
  3. 1차 투표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1차 투표의 다득표순으로 배정 인원의 차순위 득표자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배정인원만큼 확정한다.
  4. 2차 투표결과 배정인원에 미달한 경우 조합원의 의견에 따른다.

5. 2차 투표에서 동 득표시에는 1차 득표수와 2차득표수를 합한 최다득표자에 대하여 신임투표로 결정한다.
6. 2차 투표의 경우 기호는 1차 투표의 기호를 사용한다.
- ④ 상급단체파견대의원의 당선자 확정은 제3항에 준하여 파견대의원의 숫자만큼 당선자를 확정한다.

#### 제 59 조 (기타 임원의 선출)

- ① 당선된 위원장은 당선 확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대의원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② 당선된 위원장은 당선 확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의원회를 통하여 중앙회계감사를 선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제2항의 경우 천재지변 및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의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규약 제23조 제2항의 규약을 추가로 적용한다.

## 제 9 장 이 의 신 청

#### 제 60 조 (이의제기)

- ① 선거업무와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선거일로부터 2주 이내에 10명이상의 동의서와 모든 증빙서를 구비하고,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서면 통보한다. 단,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회부하여 합동회의로 결정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를 결정한다.
  1. 선거무효
  2. 당선무효
  3. 경고처분
  4. 징계위원회 회부

(별표 제1호)

# 선거인명부

한국전기안전공사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장 (인)

## 부 칙

○○ 지부

번호	소 속	부 서	성 명	서 명	비 고

제 1 조 (이의결정) 본 규정에 관한 해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제 2 조 (개폐) 본 규정은 중앙위원회의 의결로써 개폐한다.

제 3 조 (우선순위) 본 규정과 규약상의 유권해석은 규약이 우선한다.

제 4 조 (기록보관) 선거에 관한 기록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리하여 당해 본부 집행부에 제출 보관한다.

제 5 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부 선거관리사항을 지도 감독할 수 있다.

제 6 조 신생지부에 대한 선거관리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 7 조 (미비점) 본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의한다.

제 8 조 (시행) 본 규정은 통과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9 조 (경과조치) 본 규정은 위원장 선출과 관계되는 사항은 '97년 위원장 선출시 까지 유예한다.

제10 조 (경과조치) 제 22조 제2항의 단서조항 명부 열람시간은 주5일 근무제가 도입 되기 전까지는 선거일이 월요일인 경우 선거일 전주 토요일까지로 한다.

◎ 소속은 지역본부내의 본부 및 지사로 표기  
비고란은 부재자투표 표기 “부재자” 및 기타사항



(별표 제2호)

<b>부 재 자 투 표 신 고 서</b>			처리기간	
			선거당일 3일전	
신고인	성 명		소 속	
	주 소 (사업장)	(전화: )		
사 유				
<p>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선거관리규약 제23조에 의하여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신고인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b>한 국 전 기 안 전 공 사 노 동 조 합</b> <b>○○지부 선거 관리 위원 장 귀 하</b></p>				

(별표 제3호)

### 입 후보 등록 신청서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연 락 처 :  
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년 ○○월 ○○일에 실시하는 제○대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한 국 전 기 안 전 공 사 노 동 조 합**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절-----취-----선-----

### 등 록 증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연 락 처 :  
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년 ○○월 ○○일에 실시하는 제○대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고자 등록합니다.

년 월 일

**한 국 전 기 안 전 공 사 노 동 조 합**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 자 기 소 개 서

사 진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      년   월   일 (만   세)			
소 속	한국전기안전공사노동조합			지부
직 군	직	직 급	급	
입사년월일			최종학력	
주 소	전화 : (핸드폰)                               (사업소)			
노동조합 활동경력				
출마동기 (공약사항)				

한국전기안전공사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 추    천    서

○○○○년도 제○○년차 총회에 실시하는 제○대 ○○○선거에  
○○○ 을 후보로 추천합니다.

○○ 지부

번호	날 짜	사업소	부 서	사 번	성 명	서 명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한국전기안전공사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별표 제6호)

(경선용)

No. 제 ○ 차 투 표 용 지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80px; margin: 0 auto;">선거관리 위원회 인</div>	전 ○ 안 ○ 노 ○ 조	투 제 표 ○ 지 대	기호 1	기호 2	기호 3	기호 4
		○○○	○○○	○○○	○○○	○○○

한국전기안전공사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장 인

(별표 제7호)

## 선 거 투 개 표 록

선거관리위원장 ○○○ 인  
 선거관리위원 ○○○ 인  
 선거관리위원 ○○○ 인

◆ 지부명 : ○○지부                      ◆ 일 시 :    년    월    일

**제○대 ○○○선거결과**

■ 1차

○ 선거인수 :    명

○ 투표인수 :    명

■ 2차

○ 선거인수 :    명

○ 투표인수 :    명

기호	성 명	득표수	비 고
1			기권 : 명
2			
3			무효 : 명
4			
합계			

기호	성 명	득표수	비 고
1			기권 : 명
2			
3			무효 : 명
4			
합계			

한국전기안전공사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찬반용)

No. 제 ○ 차 투 표 용 지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80px; margin: 0 auto;">선거관리 위원회 인</div>	전 ○ 안 ○ 노 ○ 조	투 제 표 ○ 지 대	찬 성	반 대

한국전기안전공사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장 인

※ 참고 : 용지규격에 관한 사항은 후보자 숫자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별표 제8호)

## 대의원 선거 결과 보고서

선거관리위원장 ○○○ 인

선거관리위원 ○○○ 인

선거관리위원 ○○○ 인

## 회 의 규 정

◆ 지부명 : ○○지부

◆ 일 시 :    년    월    일

사 업 소	성 명	득표수	비 고

제 정 1995년 4월 10일  
 개 정 2002년 11월 25일  
 개 정 2003년 4월 25일  
 개 정 2014년 11월 4일

한국전기안전공사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 목 차

제 1 장 총 칙 .....	1
제 2 장 회의의 성립 .....	1
제 3 장 의 장 .....	1
제 4 장 서기 및 사찰 .....	2
제 5 장 의사의 진행 .....	3
제 1 절 총 칙 .....	3
제 2 절 의사의 제출 .....	3
제 3 절 질의와 토론 .....	4
제 4 절 표 결 .....	6
제 6 장 회 의 록 .....	6
부 칙 .....	8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조합의 각종 회의의 질서와 품위를 유지하고,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공개 원칙) 각종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단,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 3 조 (규약외의 사항) 규약 및 이 규정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당해 회의에서 결정 한다.

## 제 2 장 회의의 성립

제 4 조 (회의의 성립)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제 5 조 (개회) 회의는 성원보고가 있는 다음에 개회한다.

## 제 3 장 의 장

제 6 조 (의장)

- ① 본 조합회의는 위원장이 의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전임 부위원장이 된다.
- ② 전임 부위원장이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지명이 없을 때에는 연장자로부터 차례로 의장이 된다.

제 7 조 (의장의 의무)

- ① 의장은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를 대표한다.
- ② 의장은 이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회의를 운영한다.
- ③ 의장은 다음에 의하여 의사를 진행한다.
  - 1. 회의의 성립을 선언한다.
  - 2.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운영한다.
  - 3. 의제의 상정을 선포하고, 의사를 진행한다.
  - 4. 발언자를 지명한다.
  - 5. 모든 동의를 구성원에게 정확히 전달한다.
  - 6. 의제범위에서 벗어난 발언이나 동의, 기타 부당한 제안을 금지 시킨다.
  - 7. 의제에 대하여 표결을 선언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동시에 가결 또는 부결을 선포한다.
  - 8. 재적자가 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또는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휴회, 연기 또는 산회를 선언한다.
  - 9. 의장은 상정중인 동의의 내용을 구성원에게 적극 이해시켜야 한다.
  - 10.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시에 복종하지 않고, 회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게 경고를 하며, 그 발언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11. 방청인을 제한하거나 혹은 회의 진행상 방해가 되는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
  - 12. 기타 회의장의 규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 4 장 서기 및 사찰

### 제 8 조 (서기 및 사찰)

- ① 회의의 진행을 위해 서기 및 사찰 약간명을 둔다.
- ② 서기 및 사찰은 중앙집행위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 제 9 조 (서기 및 사찰의 임무)

- ① 서기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의사무를 처리한다.
  - 1. 출석인원의 확인
  - 2. 회의중 일체의 의사를 정확히 기록한다.

- 3. 회의가 끝나면 회의록을 작성한 다음 의장의 확인을 받고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 4. 기타 필요한 사항
- ② 사찰은 의장의 지시에 따라 회의장의 질서유지 및 정리를 하며, 다음의 임무를 행한다.
  - 1. 공정한 투표 및 개표의 관리
  - 2. 표결시 출석인원의 점검 및 가부수의 계산
  - 3. 기타 필요한 사항

## 제 5 장 의사의 진행

### 제 1 절 총 칙

#### 제 10 조 (의안의 심의) 의안의 심의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진행한다.

다만, 회의의 의결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

- 1. 의장의 의안상정 선언
- 2. 제안자의 제안설명
- 3. 질 의
- 4. 토 론
- 5. 표 결

### 제 2 절 의사의 제출

#### 제 11 조 (의안의 제출)

- ① 사무국장은 상정할 의안을 정리하여 개회전에 각 의원에게 배분한다. 단, 간단한 의안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예정된 의안 이외의 의안을 상정하고자 할 때에는 문서로 제안이유의 요지, 제안자명, 찬성자명을 기재하여 개회 5일전에 사무국장을 경유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대의원회의 부의안건은 5명이상의 찬성자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하는 의안은 예산명세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다른 규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動議)는 2인이상의 제청과 동의(同意)로서 의제가 된다.
- ⑤ 가결된 안건을 재론하자는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 의안을 발의할때의 과반수 동의로 의제가 된다.

제 12 조 (의안의 우선 취급)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의가 제출된 때에는 다른 의안에 대하여 우선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 1. 의사진행
- 2. 토론 종결
- 3. 회의장 질서에 관한 문제
- 4. 휴식, 휴회, 재개시기

### 제 3 절 질의와 토론

제 13 조 (발언)

- ① 발언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수로서 의장의 허가를 얻어 소속과 성명을 명확히 한 다음 발언한다.
- ② 발언은 의제의 범위내에서 벗어나서는 안된다. 만일 발언이 의제밖으로 벗어 났을 때에는 의장은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 ③ 발언은 간단 명료해야 하며, 다음 각호의 발언은 금한다.
  - 1. 인신공격, 기타 무례한 언사의 사용
  - 2.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3. 타인의 권한을 침해하는 사항
  - 4. 타인의 발언중에 발언하거나 이를 방해하는 일

제 14 조 (발언회수의 제한) 발언자는 동일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그러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할 때와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5 조 (질의) 질의에 있어서는 자기 의견을 발표할 수 없다.

제 16 조 (토론)

- ① 토론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대 또는 찬성의 취지를 밝히고, 발언하여야 하며, 토론에 있어서 의장은 될 수 있는대로 찬성자와 반대자를 교대로 지명하여야 한다.
- ② 토론에 있어서는 제안자와 기타 관련자도 발언할 수 있다.
- ③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을 제외하고는 질의를 하지 아니하며, 의결로 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

제 17 조 (토론의 종결) 의장은 질의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을 때에는 토론의 종결을 선언한다.

제 18 조 (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제 19 조 (토론의 순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2개이상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원안에 가까운 것부터 토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9조의 2 (의사진행발언) 토론중이라도 의사진행 발언은 먼저 심의한다.

제 19조의 3 (안건철회) 토론과정에서 발의자가 스스로 안을 철회할 수 있다.

### 제 4 절 표 결

제 20 조 (표의결 선언) 의장은 표결전에 표결에 붙이는 문제를 명백히 선언한 후 표결을 실시하여야 하며, 표결선언이 있는 후에는 누구든지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 21 조 (표의결 순서) 표의결 순서는 최후 수정안, 원안과 차이가 많은 수정안 순으로 표결하며,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 22 조 (표의결 조건) 표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 23 조 (표결방법) 표결방법은 다음의 하나로 한다.

1. 구두
2. 거수
3. 기명투표
4. 무기명 투표

제 23조의2 (의결)

- ① 본 회의는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 ② 긴급동의와 변안동의는 3분의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6 조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

## 제 6 장 회 의 록

제 24 조 (회의록 작성 및 보존) 조합은 각종 회의결과를 회의록에 기재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 25 조 (회의록의 내용)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회의의 종류
2. 회의의 일시
3. 회의의 장소
4. 출석자와 의장의 성명
5. 의제
6. 동의의 내용과 동의자 성명
7. 표결가부의 수
8.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9. 특별위원회의 보고서
10. 기타 중요사항



## 부 칙

1. 본 규정은 지부내의 모든 회의에 공히 적용한다.
2. 본 규정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 희 생 자 구 제 규 정

제 정	1995년 4월 14일
개 정	1997년 1월 19일
개 정	1998년 4월 10일
개 정	2002년 11월 25일
개 정	2014년 11월 4일

# 희생자구제규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전기안전공사노동조합(이하 전안노조라 한다)의 조합원 및 상급단체 소속된 자가 노조활동으로 인한 희생의 경우 이에 대한 조합의 제반구제행위를 규정한다.

제 2 조 (규정의 개폐) 본 규정은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개폐한다.

제 3 조 (희생자의 정의) 본 규정에서 희생자라 함은 노조활동(쟁의행위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1. 쟁의행위로 인한 사망
2. 쟁의행위로 인한 부상
3. 노조활동으로 인한 해고
4. 노조활동으로 인한 행정 또는 사법상 불이익 처우

제 4 조 (구제내용)

① 전 조의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구제한다.

1. 평균임금 120일분의 장례비
2. 유족이 생계유지 능력이 없을 경우 최저생계비 이상의 금액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희생자의정년(퇴직)기간까지 지급한다.
3. 취업알선 등으로 유족이 생계유지 능력이 있을 경우는 최저생계비 지급을 중지한다.

② 전 조의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구제한다.

1. 요양비 전액을 부담한다. 단, 회사에서 공상으로 인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위문금을 지급한다.
3. 요양기간중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회복시까지 매월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단, 업무중 공상으로 인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전 조의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구제한다.

1. 재판비용, 기타 복직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복직이 불가능한 것으로 결정될 경우 구직을 알선할 때까지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해고시 회사측으로부터 퇴직금 전액이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취업 등으로 상당액의 급여를 받을 경우는 그 구제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④ 전 조의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구제한다.

1. 재판비용 또는 원상회복(복직)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부담한다.
2. 원상 회복시까지 매월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단, 여기서는 원상회복이라함은 행정 또는 사법상의 불이익한 처분(또는 처우)의 종결을 말한다.
- ⑤ 위 각항의 구제 내용 중 승소, 혹은 사용자의 부당처분 인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이에 상당하는 구제 비용을 회수한다.
- ⑥ 위 각항의 구제내용 중 회사업무와 중복 등으로 회사에서 보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부족한 보상금 차액을 지급한다.
- ⑦ 상급단체에 소속된 자의 구제내용은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5 조 (평균임금) 본 규정에 평균임금이라 함은 희생자가 희생 발생 당시의 직급기준으로서 희생되지 않았을 경우 연간 지급받게 되는 모든 임금항목의 월 평균을 말한다.

제 6 조 (신청) 제3조에 해당되는 희생자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에게 관계 당사자나 직계가족 또는 위임받은 자가 소정양식(별표 1호 서식)에 의하여 30일 이내에 구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 7 조 (구제결정)

- ① 제6조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위원장은 즉시 중앙위원회를 소집해서 구제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심사결과는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8 조 (구제기금의 조성) 구제기금의 조성은 규약 제92조에 의한다.

제 9 조 (구제기금의 관리) 구제기금은 별도회계로 관리하며, 회계규정에 준용한다.

(별표 제1호)

### 부 칙

제 1 조 (시행) 본 규정은 최초희생자 발생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희생자구제신청서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 세 )	③ 가족사항 (미혼, 기혼) 남 여
④ 소 속	한국전기안전공사노동조합 ○○지부	
⑤ 조합직책	⑥ 공사 지급 및 호봉 ○○직 ○-○ ( 호봉 )	⑦ 입사년월일 년 월 일
⑧ 주 소	(전화 : )	
⑨ 사 유		
⑩ 발생내용		
<p>희생자 구제에 관한 조합 규약 제89조 및 동규정 제6조에 의거 구제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b>한국전기안전공사노동조합</b> 위원장 귀하</p>		

## 투쟁기금운용규정

# 투쟁기금운용규정

제 정 2002년 11월 25일  
개 정 2014년 11월 4일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규약과 투쟁방침에 따라 투쟁하는데 필요한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기금의 조성) 규약 제83조(투쟁기금)에 정한바에 따라 조성한다.

제 3 조 (기금의 용도) 투쟁기금은 다음 각호의 목적에 사용한다.

1. 정의행위 및 그와 유사한 긴급한 투쟁사유 발생
2. 희생자 구제사유 발생
3. 조직동원으로 인한 불가피한 지출사유 발생
4. 연맹 및 총연맹의 결정에 의한 투쟁분담금 납부사유 발생
5. 대의원회 의결로 인한 지출사유 발생

제 4 조 (집행) 투쟁기금은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시 중앙집행위원회 의결로 집행할 수 있고 결과를 차기 대의원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조 (기금의 관리) 투쟁기금은 별도 관리하며 회계규정에 준용한다.

제 6 조 (시행) 본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 위로 규정

## 위 로 규 칙

제 정	2000년	4월	17일
개 정	2001년	4월	12일
개 정	2006년	5월	16일
개 정	2008년	4월	17일
개 정	2010년	4월	26일
개 정	2011년	4월	19일
개 정	2012년	4월	26일
개 정	2014년	11월	4일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전기안전공사노동조합(이하 전안노조라 한다) 조합원의 열악한 노동조건 발생과 경조발생시 이를 위로하여 조직의 긴밀한 결속을 다지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대상) 본 규정의 적용대상은 전안노조 조합원에 한한다.

제 3 조 (사업)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재난발생시 복구현장 투입 사업장 조합원 위로
2. 업무상 재해로 입원 가료중인 조합원 위로
3. 장기 입원 가료중인 조합원 위로
4.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및 배우자 부모 사망시 유가족 위로
5. 본인 결혼시 축하
6. 질병으로 인한 퇴직 직원의 유가족 위로 (퇴직 1년이내 직원)
7. 자녀 결혼시 축하

제 4 조 (기준) 전 조의 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전조 제1항에 의한 조합원 위로는 연투입 인원이 소속사업장 조합원 수를 능가할 시 그 규모에 따라 100,000 ~ 300,000원까지 지급한다. 다만, 중앙집행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2. 전조 제2항에 의한 조합원 위로는 1회 문병시 200,000원의 격려금을 지급한다.
3. 전조 제3항에 의한 조합원 위로는 100,000원의 격려금을 지급한다.
4. 전조 제4항에 의한 유가족 위로는 다음과 같이 행한다.
  - 가. 조합원 사망 : 부조금 1,000,000원
  - 가-1. 조합원 사망 : 조화 100,000원
  - 나. 배우자, 자녀, 부모 및 배우자 부모 사망 (승중포함) : 부조금 100,000원
  - 나-1. 배우자, 자녀, 부모 및 배우자 부모 사망 (승중포함) : 조화 100,000원  
단, 단일사향이 2인 이상인 경우 조화는 1인 지급 (2011.4.19 신설)
5. 전조 제5항에 의한 본인결혼은 축의금 100,000원으로 한다.
6. 전조 제6항에 의한 질병으로 인한 퇴직직원의 유가족 위로는 부조금 50,000원으로 한다.
7. 전조 제7항에 의한 자녀결혼은 축의금 50,000원으로 한다.(2012.4.26 신설)

제 5 조 (명의) 본 규정에 의한 사업집행은 위원장 명의로 집행한다.

제 6 조 (시행) 본 규정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 특별위원회 운영규정

제 정	2002년	11월	25일
개 정	2014년	11월	4일

# 특별위원회 운영 규정

제 1 조 (목적) 규약 제44조(특별위원회)에 의한 특별위원회의 합리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구성)

- ① 특별위원회는 중앙위원회 및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구성한다.
- ② 특별위원회 구성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각종 정책수립을 위한 정책위원회
  - 2. 조직발전 및 강화와 연대를 위한 조직발전위원회
  - 3. 정치활동 강화를 위한 정치위원회
  - 4. 조합원 교육강화를 위한 교육위원회
  - 5. 중앙위원회 및 대의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3 조 (위원선임)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의해 선임한다.

- 1. 위원장이 위촉한다.
- 2. 중앙위원회 및 대의원회에서 위촉한다.

제 4 조 (위원장 선출)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제 5 조 (특별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구성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의 보고사항은 구성기관의 확인을 받음으로써 결정사항이 되며 위원장은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 ③ 특별위원회는 진행과정을 수시로 본부에 통보하고 의견을 교환하여야 한다.

제 6 조 (운영재원) 특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본부의 일반회계에서 충당한다.

제 7 조 (시행) 본 규정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 전임자 처우 규정

제 정	2010년	10월	13일
개 정	2013년	10월	10일
개 정	2014년	11월	4일
개 정	2015년	4월	27일
개 정	2016년	2월	25일

# 전 임 자 처 우 규 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전기안전공사노동조합(이하 “전안노조”) 비 연고 전임자의 소요비용에 대한 지원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비 연고 전임자) 비 연고 전임자라 함은 본부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던 조합원으로서 조합활동을 위해 본부에 상근하게 된 자를 말한다.

제 3 조 (부임 및 복귀 여비)

- ① 비 연고 전임자가 부임 또는 복귀할 때에는 사무규칙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 ② 비 연고 전임자가 부임 또는 복귀로 인하여 이사한 경우에 영수증 제출 시 이사비용을 실비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타 기관에서 동일 사유로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한다.

제 4 조 (귀향여비) 비 연고 전임자가(사무직원 포함) 휴일 등에 귀향하는 것을 참작하여 월4회 귀향여비를 출장 및 교육등에 관계없이 지급하고, 지급기준은 사무규칙 별표2의 기준에 따라 교통비를 지급한다.

제 5 조 (숙소 경비지원)

- ① 비 연고 전임자의 거주를 위하여 숙소를 지원하며, 숙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실비를 각호에 따라 지급한다.
  - 1. 관리비(일반관리비, 전기료 등), 가스비만 지급한다.
  - 2. 비품의 종류는 세탁기, 냉장고, TV로 한정한다.

## 부 칙

제 1 조 (시행) 이 규정은 통과일로부터 시행 한다.